

明初 洪武帝의 國家統治 구상과 『大明律』

김경록*

목 차

- I. 머리말
- II.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홍무제의 통치구상
- III. 『대명률』 제정과정과 홍무제의 법제정비
- IV. 重典吏治 구상과 현실의 간극
-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글은 명초 홍무제(洪武帝)의 국가통치 구상과 형사법의 일반적인 기반이었던 『대명률(大明律)』을 연구한 것이다. 원명교체는 일반적인 시대변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종 예제(禮制)와 법제(法制)가 정밀하게 정립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대표적인 법제가 『대명률』이며, 명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일본사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명률』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의 제정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하고, 제정주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법제를 제정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칫 『대명률』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대의 상황을 적용하여 인식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구체적인 『대명률』의 조문분석에 앞서 명초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대명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대명률』 제정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을 『대명률』과 연결시켜 살펴본다.

홍무제는 원말 사회모순을 일소하고 한족문화의 부흥을 통하여 명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황제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홍무제는 황제권의 안정을 강조하여 권력의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균형적 배분보다는 권력의 집중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통치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몽고의 통치잔재를 청산하고 유학적 도덕관념과 예제에 바탕하여 명을 건국하였지만, 내부적으로 공신세력의 반발과 외부적으로 몽골세력의 위협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홍무제는 중서성을 폐지하고 각종 법제를 제정하는 등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30여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란은 전국을 황폐화시켰다. 명 건국이후에도 각지에서 정벌전쟁이 벌어졌으며, 농민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전란으로 인한 황폐화와 자연재해는 신흥 명 제국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홍무제는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리들의 청렴함을 강조하고,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명형필교(明刑彌教)”로 표현되는 홍무제의 법 인식은 혼란한 시기에 엄한 법을 밝힘으로써 중전(重典)의 기반을 마련하고, 법은 간략하고 안정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훈계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인식한 홍무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응징하고 방지하고자 했다. 홍무연간의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은 『대명률』, 『大誥』 등과 같은 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중전이치(重典吏治)”로 표현할 수 있다. 홍무연간에 제정된 『대명률』은 대체적으로 이전의 법률에 비하여 중형의 성격이 강했다. 즉, 홍무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통치의 기강을 바로잡고, 각종 예법을 강조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홍무제는 건국직후 『명률』을 제정하고 홍무연간에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시행하여 말년에 이를 종합 정리했다. 홍무제의 국가통치구상은 법제와 예제를 통해 통치의 근본을 바로잡고,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국가운영을 지향했다.

[주제어] 홍무제(洪武帝), 통치구상(統治構想), 대명률(大明律), 대고(大誥), 예제(禮制), 법제(法制), 중전이치(重典吏治)

I. 머리말

원명교체는 일반적인 시대변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종 예제와 법제가 정밀하게 정립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대표적인 법제가 『대명률』이며, 명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대명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학계에서 일찍부터 있어 왔다. 기존 『대명률』관련 연구성과는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졌다.¹⁾ 그러나 법제는 그 시대상황과

1) 『대명률』관련 연구는 방대하여 이를 모두 요약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한국학계의 연구를 간략하게 분류하면 『대명률』의 법리적 분석[정공식, 『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명률』을 법제적인 접근 못지않게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대명률』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의 제정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하고, 제정주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법제를 제정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칫 『대명률』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대의 상황을 적용하여 인식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구체적인 『대명률』의 조문분석에 앞서 명초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대명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대명률』 제정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을 『대명률』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홍무연간 정세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홍무제의 통치구상을 황제 중심 체제구성, 重典治吏, 重典治民, 禮治의 병행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어 『대명률』의 제정과정 및 개정과정을 정리하고, 기본 법제로서 『대명률』을 벗어나 『대고』를 반포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대명률』을 통해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현실적인 법제로서 『대명률』의 간극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홍무제의 통치구상

홍무제는 원말 사회모순을 일소하고 한족문화의 부흥을 통하여 명 건국의

49권 1호(2008); 류부근, 「대명률 “保辜限期”규정의 형사법적 의의」, 『비교형사법연구』 12권 1호(2010) 등], 조선으로 전래 및 적용사례 분석[이성무,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역사학보』 125(1990); 정궁식·조지만, 「조선 전기 『大明律』의 수용과 변용」, 『진단학보』 96(2003); 문형진, 「조선시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법사학연구』 37(2008);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大明律』의 적용」, 『역사와현실』 75(2010); 심재우, 「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大明律』의 위상」, 『역사와현실』 65(2007); 한상권, 「대명률 위법치사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법사학연구』 50(2014); 한상돈·조지만, 「『大明律』 保辜限期에 관한 研究: 조선시대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51(2015) 등], 『대명률』의 판본연구 및 어문학적 접근[장경준·진윤정·허인영, 「『대명률』해」 이본의 계통과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1): 고려대 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3) 등] 등이다.

정당성을 인정받고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홍무제는 황제권의 안정을 강조하여 권력의 균형적 배분보다는 권력의 집중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통치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몽골의 통치잔재를 청산하고 유학적 도덕관념과 禮制에 바탕하여 명을 건국하였지만, 도덕적 기준에서 홍무제의 통치방식은 비도덕적 정치형태로 당시 유학지식층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원명교체의 시대상황에서 공신세력 및 지식인층은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과 효율적 운영은 병권의 향배, 황제권과 재상권의 대립 등에 영향을 받았다. 홍무제는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력과 지휘권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여 국가편제에 있어서 五軍都督府를 정1품 아문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구상했다. 통치체제의 권력집중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명령체제의 구축이 필요했으며, 공문체제와 이를 감독하는 감찰기구의 등장을 초래했다.²⁾

홍무제는 원말 반원투쟁을 통해 전국을 통일하고 명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통치구상을 형성했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책이 구상되어 시행되었으며, 농민의 주업이었던 농업을 중심으로 진흥시켜 농민의 恒産을 마련함과 함께 농민을 토지에 결부시켜 통치에 이반되지 않도록 하였다. 주원장은 원말 최하층민으로 생활하였던 경험을 통해 일반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농민들이 붕기하여 세력화되는 이유와 과정을 경험했다. 홍무제는 四民 가운데 농민이 가장 고달픈데, 봄부터 가을까지 힘들게 농사를 지어 세량을 내며, 각종 재해에 가슴을 조려 대책이 없다고 봤다. 결국 나라의 부세는 농민이 내는 것이며, 요역으로 노동하는 것도 농민이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농민이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하다고 인식했다.³⁾ 농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요역, 부세를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봤으며,⁴⁾ 농민뿐만 아니라 사민이 모두 각자 자기의 생업을 지켜 유식

2)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명청사학회, 2011) 참조.

3) 『명태조실록』 권22, 오 원년 정월 무술; 권220, 홍무 25년 8월.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호부에 유시했다.⁵⁾

건국 군주라는 점에서 홍무연간은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문제가 더욱 중시되었다. 원말 농민봉기군의 지휘관으로 성장한 주원장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며 군제를 확립했다. 1364년(지정 24) 확대되는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部伍法을 만들었다.⁶⁾ 편제를 指揮, 千戶, 百戶, 總旗, 小旗로 일원화시키고, 병사를 기준으로 5,000명에 지휘, 1,000명에 천호, 100명에 백호, 50명에 총기, 10명에 소기를 두었다. 5개의 소기가 모여 총기를, 2개의 총기가 모여 백호를, 10개의 백호가 모여 천호를, 5개의 천호가 모여 위를 구성하는 형식이었으며, 몇 개의 위와 소를 모아 중요 군사거점에 군구개념의 都指揮使司를 만들었다.

1380년(홍무 13)에 대대적인 官制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의 직능을 강화하고, 大都督府를 五軍都督府로 개편함으로써 모든 서무를 육부를 거쳐 곧바로 황제에게 일원적으로 집중되도록 하고 군사력을 5군으로 전환시켜 상호 견제를 유지하도록 했다.⁷⁾ 건국과정에서 군사활동은 필수적인 사항이었으며, 공신세력으로 성장한 무장집단은 홍무제의 통치구상에 있어 경계대상이었다. 이에 홍무제는 건국 및 변방의 안정을 위해 원활한 군사력 동원체제를 갖추고, 각종 군수조달을 위한 지원체계, 군역체계를 유지하며 엄정한 군사기강을 확립해야 했다. 또한, 군사력을 공신세력으로 부터 황제에게 일원적으로 귀속시키는 군령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중앙의 오군도독부와 지방의 각 위소를 중심으로 군제는 계속 확대되어 1392년(홍무 23)에 전국에 17개 도지휘사사, 329개 위, 65개 守禦千戶所가 설치되었으며, 총 병력은 약 120만명이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상비군을 보유한다는 점은 대외적으로 외침이나 정벌에 활용되지만, 대내적으로 절대 황제권에 저항하는 각종 모반사건, 농민반란 진압, 치안유지, 특무정치 등에 활용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비군을 유지하는 비용측면이었다. 이를 해결하는

4) 『명태조실록』 권156, 홍무 16년 9월 갑진.

5) 『명태조실록』 권175, 홍무 18년 9월 무자.

6) 『명태조실록』 권14, 4월 임술.

7) 『명태조실록』 권129, 홍무 13년 1월 계묘.

방책을 제시한 인물은 劉基였다. 유기는 중국 고대 兵制를 참고하여 명대 고유의 軍制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衛所制度였다.

유기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이를 절충한 형식의 위소제도를 만들었다. 위소제도는 전국 단위의 皆兵으로 유사시 복무와 평시 본업을 병행할 수 있고 소질과 출신이 보장되는 징병제의 장점과 직업군인으로 오랜 훈련기간과 높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병제의 장점을 모은 것으로 전투역량과 생산역량을 병합한 형태였다. 위소는 京師에서 지방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설치되었으며, 중앙은 五軍都督府가, 지방은 각 都司가 통솔했다.⁸⁾ 홍무연간의 위소 병력은 주원장이 처음 봉기할 때 병력(從征), 통일과정에서 복속된 병력(歸附), 형벌로서 복무하는 병력(謫發), 징발된 병력 등으로 이들은 모두 세습되었다. 명대 군인은 軍籍에 올라 일반 백성들의 民籍과 달리 신분·벌률·경제적으로 衛所에 소속되어 관리되었다. 군인 본인은 正軍, 자제는 餘丁(軍餘)이며, 장교의 자제는 舍人이었다.

원활한 군역체계의 유지를 위해 군적을 기반으로 한 軍戶를 설정하고, 군호와 일반 민호와의 엄격한 구별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는 『대명률』에 민호와 군호의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 형벌체계에서 신체형 뿐만 아니라 充軍刑을 광범위하게 시행하여 변방에 필요한 군사를 보충했다. 『대명률』의 充軍條目은 모두 29조목으로 ‘名例律’의 5조목, ‘吏律’의 2조목, ‘戶律’의 3조목, ‘兵律’의 15조목, ‘刑律’의 4조목 등이다.⁹⁾

30여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란은 전국을 황폐화시켰다. 명 건국이후에도 각지에서 정벌전쟁이 벌어졌으며, 농민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전란으로 인한 황폐화와 자연재해는 신흥 명 제국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홍무제는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 먼저 저하된 생산력은 감소한 노동력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먼저 인구정책, 농업정책, 조세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 먼저 인구정책은 土農工商의 4業 이외에 逸民이 발생하지

8) 『명사』 권89, 兵志65, 兵1.

9) 吳艷紅, 『明代充軍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21면.

않도록 하였으며,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를 농지와 연계시켜 정착시켰다. 이러한 정착화과정은 里甲制로 표현되었으며, 생산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조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명 건국 이전 오왕으로 즉위한 홍무제는 1367년(오 원년)에 기존 세력권의 徐, 宿, 濠, 泗, 壽, 邳, 東海, 襄陽, 安陸 등의 군현과 이후 확장된 지역은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¹⁰⁾

한편, 원말의 사회변화와 민심을 직접 경험한 홍무제는 관리의 부정과 착취는 배고픈 백성들을 반항으로 몰아간다고 인식하였다. 절대권력을 가진 황제와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모순을 완화시키고 통치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 관리들의 부정을 일소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들의 청렴을 강조하고 백성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관리들 스스로 행정과정에서 횡령을 비롯한 부패현상을 없애고자 했다. 사회적으로 만연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훈계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인식한 홍무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응징하고 방지하고자 했다. 홍무연간의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을 “重典吏治”로 표현할 수 있다.

홍무제의 중전치리 정책은 단순히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만은 아니다. 원명교체의 격동기에 수십년 사회혼란에 노출된 백성들이 관리들의 부정에 대해 익숙해져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으며, 관리의 부정은 황제권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 건국된 명의 통치질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황제에 의해 임명된 관리의 부정과 횡령은 황제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통치구조의 부패를 초래할 것이며, 관리들의 착취는 일반 백성들의 꺾박으로 이어져 결국 농민봉기를 비롯한 불순세력의 양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홍무제는 행정체계를 정립하며 핵심요소인 공문제도를 정비했다. 홍무제는 명 건국 초기에 행이주체에 따라 황제문서와 관부문서로, 황제문서는 하행문과 상행문으로, 관부문서

10) 『명태조실록』 권23, 오 원년 5월.

는 상행문, 평행문, 하행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奏本, 啓本, 照會, 咨呈, 劄付, 呈狀, 申狀, 平關, 牒呈, 平牒, 牒上, 故牒, 下帖 등 주요 공문을 체계화시켜 엄격한 行移體制를 준수하도록 했다.¹¹⁾

홍무제는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公文제도를 마련했다. 공문은 황제와 관부 사이에, 관부와 관부 사이에 行移되는 다양한 문서, 각종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기록물을 통칭한다. 이러한 공문은 文券으로 정리되어 檔案으로 보관되었는데, 행정처리의 결과물로 각 관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점검, 관리의 考課평정의 기본자료이자 차후에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리의 증빙문서로 활용되었다. 행정처리 및 고과평정의 측면에서 관련제도는 勘合制度, 照刷文卷, 磨勘卷宗의 3종류가 있다.

1382년(홍무 15) 홍무제는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중앙집권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서행이체계를 시행했다.¹²⁾ ‘勘合’이란 공문에 字號를 기록하고 校勘하여 공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것이다.¹³⁾ ‘諸司勘合制度’로 명명된 감합제도는 簿冊을 좌우 양면으로 구분하여 空紙에 字號를 기입하고 內府의 關防印을 찍는다. 해당 관사는 행이된 공문과 동일한 字號와 印章이 찍힌 종이를 사용하여 공문을 작성하고 행이하는데, 이를 ‘半印勘合’이라 한다. 홍무제가 구상한 공문의 행이체계는 權臣의 발호를 방지하고 공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勘合제도로 구성됐다. 이러한 감합제도는 『대명률』의 반영되어 각종 보고, 소송, 행이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적합여부에 따라 처벌되었다.

한편, 명대는 기록물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기록물관리를 관장·심사했던 都察院(소속된 각 道 監察御史와 按察司)에서 각 관부를 감찰하는데, 행이된 각종 공문을 점검하는 것을 照刷라고 한다.¹⁴⁾ 감찰기관에서 문권을 수단이자 대상으로 각 관부를 감찰했기 때

11)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명청사학회, 2006) 참조.

12) 『명대조실록』 권141, 홍무 15년 1월 갑신.

13) 『諸司職掌』 吏部 司封部 勘合; 通政司 關防諸司公文勘合.

14) 『諸司職掌』 都察院.

문에 照刷文卷이라 한다. 도찰원에서 관장하는 照刷文卷제도는 1393년(홍무 26)에 제정됐다.¹⁵⁾

감찰관부에서 조쇄하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했다. 문서 작성일자의 조작여부, 사용해야 할 印信의 누락여부, 기재한 성명의 사실여부, 문서 내용에 있어 文義의 착오, 글씨모양의 이상여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문자의 사용여부, 조쇄 받으러 도착한 날짜, 문서의 行移體系에서 이상여부, 사용된 印押의 이상여부, 錢糧과 같은 문서내용의 정확성, 문서 행이과정에서 판결에 관련된 사항의 포함여부, 人命에 관련된 사항의 이상여부, 수입과 지출의 적합성 등 명대 각종 행정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사했다.

조쇄결과는 담당 업무의 시행여부와 완결여부, 업무진행에 폐단유무, 規避 여부를 기준으로 5종류로 처리되는데, ‘照過’(완결, 폐단 없음), ‘通照’(미완, 폐단 없음), ‘稽遲’(업무진행 매우 늦음), ‘失錯’(완결, 폐단 있음, 規避 없음), ‘埋沒’(미시행, 規避 있음) 등이다. 또한, 육방의 조쇄를 살펴보면, 吏房(起取罷閑官吏文卷), 戶房(開墾荒田文卷), 禮房(買辦祭祀豬羊果品香燭等項文卷), 兵房(勾補軍役文卷), 刑房(貪贓壞法文卷), 工房(成造船隻文卷) 등이다. 조쇄 문권실시 3개월후 해당 관부의 감찰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감찰이다. 주로 문권의 미완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磨勘은 원래 해당 관부의 文券과 미완의 宗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磨勘卷宗이라 한다. 『대명회전』에 ‘在京十三道 照刷卷宗衙門’ 등과 같이 도찰원에서 주관하는 조세문권과 마감권종을 일련의 감찰과정으로 파악하여 개별 照刷卷宗이라 말한다.

1382년(홍무 15) 홍무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半印勘습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¹⁶⁾ 제사에서 모든 행정행위에 공문을 시행하며 簿冊을 작성할 때, 空紙의 절반에 字號를 編寫하여 內府의 관방인을 찍는데, 종이의 우측 절반은 簿冊으로 남겨두고, 좌측 절반은 諸司로 내려주어 각종 文移과정에서 감합하여 확인되면 문서로 행이하도록 했다. 이러한 감합제도의 시행은 행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공문제도

15) 『대명회전』 권210, 都察院2, 照刷文卷.

16) 『명태조실록』 권141, 홍무 15년 1월 갑신.

와 감합제도의 시행은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통치체제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통치체제를 지향하였던 홍무제의 통치구상을 엿볼 수 있으며, 『대명률』의 각 조항에 반영되어 감합, 조쇄, 문권 등 용어로 기재되었다.

통치체제의 주요 제도를 마련한 홍무제는 重典治民의 입장에서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법제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홍무제는 기본적으로 “明刑弼教”를 강조하여 『대명률』을 제정하고 반포한 이외에 율법의 의미가 있는 『大誥』를 반포하고, 각종 습을 강조했다. 『대명률』을 비교하면 “刑用重典”의 인식을 가지고 “德主刑輔”사상이 있었다. 홍무제는 周禎을 형부상서로 임명하면서 유지하기를 刑이란 다스림을 보좌하는 것이며, 형이 명확하면 堯舜과 같은 현명한 군주가 나와 雍熙의 다스림이 지극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¹⁷⁾ 법제 가운데 刑의 바르고 밝게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형의 보좌를 받아 군주가 德을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

홍무제의 통치구상에 있어 법제에 입각한 법치주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제를 정비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교화의 실효를 거두고자 했으며, 이에 입각하여 각종 예제정비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 홍무제는 禮治의 일환으로 예제를 정비하여 ‘卽位禮儀’의 제정에서부터 홍무 원년에 祀典을 定擬하고, 『存心錄』을 편찬하였다.¹⁸⁾ 개인의 행동방식을 규정하고 전통과 유학을 기반으로 정비함으로써 체제에서 이반되지 않는 인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직으로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예제는 규모와 형식면에서 보다 확대되어 天地海嶽에 대한 제사, 종묘와 사직, 황실관련 각종 의례, 관료체계의 등급과 신분질서의 구분, 다양한 인사분야, 親征 및 군사분야, 獻俘, 朝會 등 통치측면에서 필요한 예제 등을 정비했다. 홍무 말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된 예제는 명대뿐만 아니라 청대에 계승되었다. 명초에 통치의례에서 중요하였던 각종 儀禮를 정비하며, 초기에 다소 번잡한 부분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諸司職掌』으로 頒布하였다. 홍무제의 예제정비는 단순한 의례제정 차원을 넘어 『大明集禮』와 같은 예제서의 반포로 이어졌다. 『大

17) 『명태조실록』 권47, 홍무 2년 11월 기유.

18) 『명태조실록』 권28(상), 오 원년 12월 신유; 권31, 홍무 원년 3월 을해.

『明集禮』의 편찬 이후 홍무제가 재위 30여년 동안 강조하여 편찬된 禮書는 『孝慈錄』, 『洪武禮制』, 『禮儀定式』, 『諸司職掌』, 『稽古定制』, 『國朝制作』, 『大禮要議』, 『皇朝禮制』, 『大明禮制』, 『洪武禮法』, 『禮制集要』, 『禮制節文』, 『太常集禮』, 『禮書』 등이다. 홍무연간 건국에 따른 文物典章의 정비와 통치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각종 儀禮가 광범위하게 제정되었으며, 이는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반영되었다.¹⁹⁾

홍무제에 의해 성립된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여러 조공국은 명의 각종 법제를 준용하여 법제운영을 시행했다. 이는 책봉국으로 명이 제정한 각종 법제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Ⅲ. 『대명률』 제정과정과 홍무제의 법제정비

홍무연간에 있어 「律」과 「승」의 관계는 구분되었다. 홍무제는 율령은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며, 영은 일이 있기 이전에 교화하는 것이고, 율은 일이 있고 난 뒤 바르게 하는 것이라 인식했다.²⁰⁾ 『대명령』은 주로 諸司의 제도를 위주로 하여 각종 제도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형벌규정은 없다.

명대의 대표적인 법전인 『대명률』은 홍무제의 국가건설 및 통치체제에 따라 오 원년, 홍무 6년, 홍무 22년 등 다양하게 제정, 수정, 경정되어 홍무 30년에 반포됐다.²¹⁾ 오 원년의 「율」이 제정작업에 들어가 홍무 1년 공식 제정된 이후 『대명률』은 홍무연간 모두 3차례 큰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명률』은 명대 이전 법전편찬의 역사를 집약한 의미와 함께 청대와 근대 중국입법의 발전을 추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명률』을 통해 반영된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은 “重典治國”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엄격한 제도와 법률을 통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19) 김경록,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 37(명청사학회, 2012) 참조.

20) 『大明律·大明令』(法律出版社, 1998), 231면.

21) 楊一帆, 「“大明律”修訂始末考」, 『政法論壇』 1990-2. 참조

<표 1> 대명률의 제·개정 과정

| 시기 | 대명률 | 시대상황 |
|--------------|------------|------------------|
| 1367년(오 원년) | 律 285條 제정 | 오왕 즉위, 명 건국 |
| 1374년(홍무 7) | 『대명률』 詳定 | |
| 1376년(홍무 9) | 일부 律條 詳議釐正 | |
| 1389년(홍무 22) | 『대명률』 修訂 | 1380년(홍무13) 관제개혁 |
| 1397년(홍무 30) | 『대명률』 반포 | |

홍무제는 일찍부터 국가의 안정에 있어 우선적인 전제가 立法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禮法이 국가의 기강이며, 예법이 바로서면 人志가 안정되고 上下가 편안하다고 보고 건국 초기에 우선적으로 예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원말의 사회혼란과 부패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무제에게 각인되었다.²²⁾ 특히, 홍무제는 원말 농민봉기를 경험하여 국가흥망과 농민봉기의 연관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관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홍무제의 이러한 인식은 “紀綱法度爲治之本”으로 표현할 수 있다.²³⁾ 명 건국이전 이미 기강과 법도를 治國의 근본으로 인식한 것이다.

오 원년 말엽에 주원장의 북벌군이 산동을 평정하고, 남정군이 方國珍을 항복시키고 福建을 취하는 등 군사적으로 천하통일의 형세가 갖추어졌다. 주원장의 세력은 천하통일의 형세에 즈음하여 전국통치를 위한 통치체계의 전환이 필요하였으며, 그 요체는 稱王에서 稱帝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통치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皇朝의 개창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1367년(오 원년) 7월에 李善長을 비롯한 신료들이 皇帝位의 卽位를 奏請한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²⁴⁾ 주원장은 제국으로 통치체제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이 예제의 정비, 관제의 개편, 율령의 제정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율령의 제정은 10월에

22) 『명태조실록』 권14, 정월 무진.

23) 『명태조실록』 권26, 오 원년 10월 을묘.

24) 『명태조실록』 권24, 오 원년 7월 갑신.

본격화되었다.

주원장은 1367년(오 원년) 10월에 율령 제정을 위한 議律官을 임명하고, 12월에 律 285조를 제정했다. 처음 中書省에 律令을 정하도록 지시하고 좌승상 李善長을 總裁官으로, 議律官으로 參知政事 楊憲, 傅瓛, 御史中丞 劉基, 翰林學士 陶安, 右司郎中 徐本, 治書侍御史 文原吉, 范顯祖, 經歷 錢用壬, 監察御史 盛原輔, 吳去疾, 趙麟, 崔永泰, 張純誠, 謝如心, 大理卿 周禎, 少卿 劉惟敬, 大理丞 周湏, 評事 陳敏, 孫忠, 按察使 李詳, 潘黼, 滕毅, 僉事 程孔昭, 傅敏學, 王藻, 遂永貞, 張引, 吳彤 등을 임명했다.²⁵⁾

오 원년에 제정된 『대명률』은 전란의 시대라는 시대상황, 구체적인 율문을 세밀하게 검토하기에 통치경험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율문을 간략하게 제정하였다. 이는 법은 귀하되 간단해야 마땅하고, 백성들이 쉽게 알아보고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작용되었다. 오 원년의 「율」은 吏律(18조), 戶律(63조), 禮律(14조), 兵律(33조), 刑律(150조), 工律(8조)로 구성됐다. 명 건국이후 오 원년의 「율」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오 원년의 「율」은 시기적으로 오 원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오 원년 「율」로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황조를 개창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제정되었으므로 『대명률』의 시작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율」을 반포한 뒤 20일 뒤에 주원장은 황제로 즉위하여 洪武 연호를 반포하고 명 제국을 천하에 선포했다.²⁶⁾

1373년(홍무 6) 11월 홍무제는 형부상서 劉惟謙으로 하여금 『대명률』을 詳定하도록 했다. 처음 「율」을 반포한 뒤 백성들이 알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大理卿 周禎 등으로 직해하여 민간에 반포하도록 하였으며,²⁷⁾ 이때에 儒臣과 刑官으로 하여금 함께 「唐律」을 강독하여 날마다 20여 조문씩 올리도록 하고 직접 御覽했다. 이들 조문을 홍무제가 酌量하여 시행할 것을 추리고, 이때 유유겸으로 하여금 상정하도록 하여 『대명률』의 篇目を 정했다. 오형

25) 『명태조실록』 권26, 오 원년 10월 갑인.

26) 『명태조실록』 권28, 오 원년 12월 갑진; 권28하, 오 원년 12월 갑자.

27) 『명사』 권93, 형법지1.

(笞刑, 杖刑, 徒刑, 流刑, 死刑)과 名例, 衛禁, 職制, 戶婚, 廩庫, 擅興, 盜賊, 鬪訟, 作偽, 雜律, 捕亡, 斷獄 등 12개의 편목으로 舊律 288조에 續律 128조를 더하였으며, 舊습에서 율로 개정된 36조, 사건으로 인해 제정한 율 31조, 唐律로서 補遺한 123조 등 도합 30권 606조를 홍무제에게 제출했으며, 홍무제는 친히 검토하여 翰林學士 宋濂이 ‘進大明律表’를 올리자 반포했다.²⁸⁾ 홍무제는 이후 지속적으로 『대명률』의 수정을 진행했다. 1376년(홍무 9) 10월 홍무제는 『대명률』을 살펴보다 중서성 좌승상 胡惟庸, 御史大夫 汪廣洋 등으로 하여금 조문이 너무 번잡하고 의미를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대 蕭何의 『漢律九章』처럼 간략하게 詳議하여 更定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446조의 조문을 완성하였다.²⁹⁾

대외적으로 북방의 북원세력이었던 나기추가 투항하고 요동경략이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고, 대내적으로 통치체제가 안정화되자 1389년(홍무 22) 홍무제는 그 동안 통치경험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대명률』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형식과 체제,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을 시작했다. 이 해의 『대명률』 개정 작업은 먼저 형부에서 제기했는데, 매년 律條의 增損이 있어 理刑官, 初入仕者 등이 모르는 바가 있고, 斷獄에 마땅함을 잃는 사례가 있어 編類하여 頒行할 것을 청했다. 이에 翰林院과 刑部의 관원들로 하여금 개정하도록 하였다. 舊律의 名例律이 斷獄 뒤에 편제된 것을 篇首로 하되 30권, 460조였다. 名例는 1권(17조), 吏律은 2권(職制 15조, 公式 18조), 戶律은 7권(戶役 15조, 田宅 11조, 婚姻 18조, 倉庫 24조, 課程 19조, 錢債 3조, 市廛 5조), 禮律은 2권(祭祀 6조, 儀制 20조), 兵律 5권(宮衛 19조, 軍政 20조, 關津 7조, 廩牧 11조, 郵驛 18조), 刑律 11권(盜賊 28조, 人命 20조, 鬪毆 22조, 罵詈 8조, 訴訟 12조, 受贓 11조, 詐偽 12조, 犯奸 10조, 雜犯 11조, 補亡 8조, 斷獄 29조), 工律 2권(營造 9조, 河防 4조) 등이었다.³⁰⁾

1397년(홍무 30) 홍무제는 『大明律誥』를 완성하여 천하에 반포하고 榜文

28) 『명태조실록』 권86, 홍무 6년 11월 경인.

29) 『명태조실록』 권110, 홍무 9년 10월 신유.

30) 『명태조실록』 권197, 홍무 22년 8월.

을 제시하여 천하가 알도록 하고 謀逆과 『律誥』에 기재된 죄를 제외한 죄는 贖罪의 사례로 논단하도록 하였다. 특히 홍무제는 자신의 『대명률고』를 책으로 만들어 간행하여 반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백성들이 준수하도록 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명하여 이를 자신의 恤刑의 뜻이라 하였다.³¹⁾ 일반적으로 이때 반포된 것을 『欽定律誥』라 하는데 147조였다. 이후 명의 모든 판결은 『대명률』에 의거하여 적용되었으며,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공국들도 이를 준용하였다.

건국초기 홍무제는 御史와 같은 관원의 임명에 있어 유학자들이 대부분 임명되어 經史에 능통하지만 風憲官으로서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법률적 소양을 높이도록 주문하기도 했다.³²⁾ 이는 법제의 정비와 함께 법률적 소양을 지닌 법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홍무제가 단순히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의 양성에도 주목하였음을 보여준다.

홍무제는 『대명률』을 제정하면서 한편, 『大誥』를 제·수정하여 반포했다. 『御制大誥』는 1385년(홍무 18) 8월에 반포되었으며, 1386년(홍무 19) 3월에 『御制大誥續編』이, 11월에 『御制大誥三編』이, 1387년(홍무 20) 12월에 『御制大誥武臣』이 반포되어 『대명률』에서 부족한 신민의 범죄처벌을 보충했다.³³⁾ 실제 홍무연간에 『대명률』과 『대고』는 최고 법률성격의 기능을 수행했다. 『대고』의 서문과 반포시 諭示를 통해 『대고』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御制大誥』를 완성하여 반포하며 원이 지배하면서 오랑캐의 法典章을 사 용하니 상하의 등급이 없어지고 권신에게 권력이 집중있어 뇌물 등으로 형옥이 부정부패하였으며, 권신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고 법을 다스리는 자는 죄를 묻지 않게 되어 법제가 무너져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인식했다. 이는 華風이 몰락하고 彝道가 경도되었기 때문이라 보고 홍무제가 즉위한 이래 禮樂의 확립, 法制의 제정, 衣冠章服의 회복을 통해 綱常을 바르게

31) 『명태조실록』 권253, 홍무 30년 5월 갑인.

32) 『명태조실록』 권36상, 홍무 원년 11월 정미.

33) 『명태조실록』 권176, 홍무 18년 10월 기축; 권177, 홍무 19년 3월 신미; 권179, 홍무 19년 12월 계사.

하고 上下를 밝히고자 선왕의 법으로서 『대고』를 적어 반포함으로써 忠君·孝親·治人修己를 진작시키고자 하였음을 밝혔다.³⁴⁾ 『어제대고』는 반포된 이후 별도로 國子監生과 각 부·주·현의 학생들에게 내려졌다.³⁵⁾

홍무제는 친히 서문을 작성한 『御制大誥三編』에서 중외의 신민들이 원의 타락한 풍속을 버리지 못하여 직업에 안정되지 못하여 고대 大誥로서 다스렸음을 인용하여 世事的 善함을 法받고 惡함을 징계하기 위해 친히 적어 반포하였음을 천명했다.³⁶⁾

『대고무신』은 건국이전부터 지속된 각종 전쟁에서 세력을 가진 무신들이 법령을 알지 못하여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으므로 홍무제가 친히 32편을 지어 紀律을 지키고 군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³⁷⁾ 홍무제는 『대고』의 적용을 강제하기 위해 관리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필수적으로 지참하여 준수하도록 명령했다.³⁸⁾

홍무제가 『대고』의 명칭과 형식을 차용한 것은 『尙書』의 大誥篇이었다. 周公이 은을 정복하며 신민에게 내린 훈계를 모든 것이 대고편이다. 그러나 『상서』의 대고와 달리 홍무제의 『대고』는 신생 제국 명의 일원적인 황제중심의 통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對관리, 對민의 엄격한 형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명률』의 제정배경과 동일하게 홍무제는 원의 멸망이 국가기관이 문란하고 관리들이 탐욕스러워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음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 내외적으로 붕괴되었다고 인식한 점에 있었다. 그러므로 『대고』는 철저하게 국가의 다스림은 엄격하게 함에 있고 이는 형벌을 준엄하게 함에서 찾았다. 『대고』의 각 조목 가운데 80% 이상이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점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대고』의 흑형주의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탐학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34) 『명태조실록』 권176, 홍무 18년 10월 기축.

35) 『명태조실록』 권177, 홍무 19년 정월 경진.

36) 『명태조실록』 권179, 홍무 19년 12월 계사.

37) 『명태조실록』 권187, 홍무 20년 12월.

38) 『명태조실록』 권182, 홍무 20년 윤6월 갑술.

1385년(홍무 18)에서 1387년에 이르기까지 홍무제는 『大誥』, 『大誥續編』, 『大誥三編』, 『大誥武臣』 등 총 4편의 『대고』를 반포하였다. 『대고』 74조, 『대고속편』 87조, 『대고삼편』 43조, 『대고무신』 32조 등 총 236조의 『대고』는 큰 道를 보여 천하를 깨우치다는 의미는 臣民이 경계하도록 하여 영원히 훈계로 삼는다는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백성들의 반발을 방지함에 있었다. 『대고』의 내용은 첫째, 홍무연간의 형사처벌에 대한 사례를 모은 것으로 특히 1384년(홍무 17년)부터 1386년(홍무 19)에 홍무제가 법제 이외에 처벌하였던 각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陳述案件과 별도로 반포된 重刑法습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홍무제가 관리와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각종 訓導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대명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사안에 따른 案例(124條), 峻令(49條), 訓戒(43條) 등을 법규문헌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고』는 주로 관리에 대한 처벌과 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오 원년의 「율」과 「령」, 명 건국이후 『대명률』 등이 반포되어 명 법제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원대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특히 건국초기의 시대상황으로 관리들의 탐학과 횡령 등이 여전하였기 때문에 홍무제는 『대고』를 반포하여 형율을 적용하였는데, 다른 법률에 비해 가혹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대명률』의 법제로 통제되지 않는 사회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를 보다 강력한 형벌로서 제어하고자 하였던 홍무제의 통치구상이었다. 또한, 통치과정에 각종 반역이나 경제범죄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홍무제는 율문에 제한된 형벌이외에 가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법제의 무력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 가운데 형벌에 관련된 각종 보완하는 법령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고』이다.

1372년(홍무 5) 2월, 홍무제는 일반 백성들이 禁令을 알지 못하여 刑憲을 어기는 일이 있으니 내외 각 州·府·縣의 里社에 “申明亭”을 설치하도록 했다.申明정은 해당 지역의 백성이 법을 어기면 그 성명, 죄상 등을 방으로 정자에 걸어두어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로 삼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한편, 1383년(홍무 16)에는 旌善亭을 설치하여 孝子, 順孫, 義夫, 節婦 등의

旌表를 걸어두어 교화하고자 했다.³⁹⁾ 이러한 신명정, 정선정은 관리들에게 확대되어 有司의 관리가 선정하면 정선정에, 범죄하면 신명정에 그 죄상을 걸어두어 경계하도록 했다.⁴⁰⁾ 홍무제의 이러한 권선징악적 정책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390년(홍무 23) 홍무제 스스로 신명정과 정선정의 시행이 有司의 성실하지 않은 奉行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거듭 준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⁴¹⁾

최하층민 출신으로 최고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의 절대화와 독재화는 권력유지에 필수적인 목적이 되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령을 제정하고자 했다. 『대명률』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확인되듯 홍무제는 친히 율령제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통치구상에 입각한 방향으로 법제를 구축했다. 특히,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에게 직속시켜 모든 정무를 관장하면서 형부의 법제정비는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홍무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있어 이의 해결은 철저히 국가(관)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쟁론할 때 반드시 관에 고하고 관의 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했다.⁴²⁾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하의 모든 쟁론이 국가기관을 통해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방대한 영토에서 수 많은 인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모든 쟁론을 국가기관의 정식 판결을 거쳐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는 물리적인 범위와 제도적인 절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당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국가의 정식 법제와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다양하게 부정적이고 사적인 해결방법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39) 『명태조실록』 권72, 홍무 5년 2월 정미.

40) 『명태조실록』 권172, 홍무 18년 4월 임인.

41) 『명태조실록』 권206, 홍무 23년 11월 기축.

42) 『대명률』 권20, 刑律3, 鬪毆, 威力制縛人.

IV. 重典吏治 구상과 현실의 간극

절대 황제중심 중앙집권 통치체제 구축이라는 홍무제의 통치구상은 결과적으로 성취되었다. 재상권으로 대표되는 신권은 철저히 제압되고 모든 절대 권력은 황제에게 귀속되었으며, 황제의 보좌기관으로 특무조직이 모든 신하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명은 중국을 통일하는 군사활동뿐만 아니라 건국과 동시에 행정체제를 갖추어 국가로서의 면모를 명확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1371년(홍무 4)을 기준으로 6국공 28후를 비롯한 공신세력은 점차 권력집단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건국과정에서 공훈을 바탕으로 지역을 封爵받고, 奴僕을 부여받았으며, 각지에 설치된 衛所의 군사지휘관들과 통솔관계를 맺고 있었다. 무엇보다 군사역량과의 추종관계는 신생 명의 황제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 또한, 공신을 비롯한 귀족세력이 불법으로 백성을 침탈하고 국가의 부역을 은폐 및 侵占, 淮西의 공신세력과 강남 문인세력의 갈등과 같은 권력층 내부의 분열, 황제권을 위협할 수 있는 권력층의 군사적 역량, 황제중심의 권력구조에 대한 반발 등과 같은 다양한 내부 모순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모순 이외에 명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명초 황제 권과 신권의 충돌은 정치이념의 분화, 절대 황제권에 대한 시각차이 등으로 인해 보다 격렬하게 전개되었다.⁴³⁾ 일례로 홍무제는 맹자의 “民貴君輕”이론을 배척하고자 문묘에서 맹자의 配享을 파출시켰는데, 형부상서 錢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결국 맹자배향이 유지되기도 했다.⁴⁴⁾

한편, 법제와 관련하여 명초 홍무제의 강력한 법제의 시행은 공신과 권신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이의 갈등은 점차 증폭되었다. 특히, 개국공신세력은 공훈에 의거하여 별도의 대우를 요구한 반면, 홍무제는 각종 법령의 집행을 강조했다. 명 건국초기 권력층의 갈등양상은 황제와 공신세력, 淮西출신과 浙東출신의 반감, 지역과 출신에 따른 알력 등이 겹쳐져 복잡하게 전개됐다. 건국시 좌승상으로 공신세력을 대표하였던 李善長으로부터 胡惟庸에

43) 李佳, 『論明代的君臣衝突』(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15면.

44) 『명사』 권139, 列傳27, 錢唐傳.

이르기까지 회서출신 공신들은 17년동안 권력층의 장악하고 있어 홍무제로서도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황제권 강화의 시발점은 호유용의 옥사였다.

호유용의 옥사는 회서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었으며, 이후 10년 뒤 호유용의 반란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 남아있던 공신세력 가운데 회서세력은 거의 제거되었다. 또한, 회서세력 가운데 무장세력은 남옥의 옥사와 풍승의 옥사를 통해 제거되었다. 건국과정에서 강남군웅들을 제압하고, 몽골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역전의 맹장들이 모두 제거되자 남은 주요 무장세력은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 배치된 친왕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자칫 황제권의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황위계승에 관련하여 반역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홍무제 사망이후 바로 일어난 연왕의 靖難之役이 있었다. 강력한 연왕의 군사력과 몽골귀속세력을 대응할 황제의 군사력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홍무제는 공신뿐만 아니라 공신이 소유한 公田의 莊佃들이 공신의 권세를 끼고 각지에서 백성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공신에게 諭示하기도 했다.⁴⁵⁾ 그러나 공신들의 침탈은 줄어들지 않자 1372년(홍무 5) 6월에 공부로 하여금 공후 등 권신들에게 경고하는 9條令을 새겨넣은 鐵榜을 만들도록 하였다.⁴⁶⁾ 내외 각 指揮, 千戶, 百戶, 鎮撫, 總旗, 小旗 등이 사사로이 公侯로부터 金帛, 衣服, 錢物 등을 받은 경우, 공후 등이 황제의 허가없이 사사로이 官軍을 부리는 경우, 공후의 가문이 官民의 山場, 차밭, 갈대밭, 금광, 은광, 동광, 제철소 등을 강점하는 경우, 내외 각 衛의 관군이 출정할 때가 아님에도 공후의 侍位를 하는 경우, 공신 집안의 둔전 佃戶나 莊田 관리인, 火者, 奴僕과 기타 친속이 권세를 믿고 백성을 침탈하여 田産과 재물을 빼앗는 경우, 공신 집안의 장전 관리인이 권세를 믿고 향리에서 백성을 때리는 경우, 공후의 집안이 정해진 儀仗戶와 佃戶를 하사받은 것 이외에 사사로이 문하에 투탁하여 요역을 회피하려는 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공후집안이 권세를 믿고 양민을 속이고 억압하여 실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여 남의 토지, 건

45) 『명태조실록』 권70, 홍무 4년 12월 갑신.

46) 『명태조실록』 권74, 홍무 5년 6월 을사.

물, 가축을 침탈하는 경우, 공신집안이 다른 사람의 전토나 분명하지 않게 바쳐진 재산을 받아들이는 경우 등에 초범, 재범, 삼범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 내용을 밝혔다.

홍무제의 重典吏治정책의 결과 많은 관리들이 酷刑으로 죽었다. 홍무연간에 실제 시행된 중형은 법률에서 제시된 바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며, 신체형 뿐만 아니라 중형에 따른 재산몰수와 같은 경제형은 집단적인 생존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⁴⁷⁾ 홍무연간에 시행된 중형으로 凌遲處死, 刷洗, 梟令, 抽腸, 剝皮, 挑膝蓋, 錫蛇游 등이 있었다.⁴⁸⁾

홍무제가 처음 흑형으로 다스리면 관리들의 부정, 부패가 줄어들 것을 고려했지만, 홍무제가 지향했던 바처럼 줄어들지는 않았다. 홍무제는 1385년(홍무 18) 「任蕭安石子孫敕命」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짐이 즉위한 이래 옛 제도를 본떠 관리를 임명하고 華夷를 뚜렷하게 가려 내었다. 발탁되어 등용될 때에는 충성하고 깨끗하더니 자리에 오래 있자 간사하고 탐욕스럽게 되었다. 짐은 이에 憲章을 밝혀 형벌로서 책임을 묻고 용서하지 않았다. 안팎의 관료가 자기 직분을 다하기가 어렵고 끝까지 잘 마치는 자는 적으며, 자신과 집안이 모두 誅戮 당하는 자가 많았다.⁴⁹⁾

홍무 18년 9월 24일에 蕭安石을 廣東鹽課提舉司 廣州鹽課大使로 임명하며 내린 칙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중형으로 결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들이 중형에 대해 두려워함을 확신하며 특히 부정의 소지가 많은 鹽政에 관리를 임명하며 중형으로 申飭한 것이다.

이처럼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민감하였던 이유는 국가통치체제에서 황제권에 대한 위협이자 일반 백성들이 탐학결과로 봉기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기

47) 『大誥三篇』 逃囚.

48) 『明朝小史』 권1, 國初重刑.

49) 『明朝小史』 권2, 誅戮官員. “朕自即位以來 法古命官 列布華夷 豈期擢用之時 並效忠貞 任用既久 俱系奸貪 朕乃明以憲章 而刑責有不可恕 以至內外官僚 守職惟艱 善能終是者寡 身家誅戮者多”.

때문이다. 홍무제의 통치구상에서 관리들은 황제와 백성의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존재였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폐단을 초래하였다. 기본적으로 원명교체기 사회안정을 위해 백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들을 토지와 연결시켜 정착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몽골치하의 풍속을 정화하고, 전통적인 한족의 풍속을 부활시킴과 동시에 예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무연간에 지속적으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원대 권신들의 발호로 인하여 驅와 奴를 비롯한 노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농업생산력을 가늠하는 노동력이 부족하였다. 홍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란 중에 노비가 된 자는 다시 민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⁵⁰⁾ 이외에 기근으로 노비가 된 자를 국가에서 속환하여 돌려보내거나 일반 서민은 노비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⁵¹⁾ 서민이 노비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과 함께 현실적으로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국가조세의 측면에서 홍무제는 농지확보 및 노동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명 건국초기 전국적으로 토지의 황폐화, 농사인구의 부족, 재해의 빈발 등으로 농업생산력이 악화되자 대대적으로 토지개간을 추진하여 수 많은 간전을 늘였으며, 위소를 중심으로 둔전을 시행하여 국방과 농업의 이중 효과를 증진시켰다. 또한, 徙民정책을 추진하여 조밀한 인구와 적은 토지의 인구를 희박한 인구와 넓은 황무지의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비를 민으로 속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대적인 면세조치를 취했다. 홍무제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381년(홍무 14) 전국적으로 賦役黃冊을 만들며 파악하니 인구 59,873,305口, 人戶 10,654,362戶였으며, 官田과 民田의 총수가 3,667,715頃 49畝로 파악되었다.⁵²⁾ 이후

50) 『명태조실록』 권73, 홍무 5년 5월.

51) 『명태조실록』 권179, 홍무 19년 8월 경자; 『大明律』 戶律 戶役 立嫡子違法.

52) 『명태조실록』 권140, 홍무 14년 12월.

1393년(홍무 26) 파악된 인호는 10,652,870호, 60,545,812구로 홍무연간 안정적으로 인호를 유지하였다.⁵³⁾

<표 2> 명초 인호와 인구통계(홍무 14년 기준)(단위 : 호/구)

| 구분 | 호 | 구 |
|--------------------------|------------|------------|
| 直隸, 應天 등 14개 부와 徐州, 和州 등 | 1,935,046 | 10,241,002 |
| 浙江布政使司 | 2,150,412 | 10,550,238 |
| 山西布政使司 | 596,240 | 4,030,454 |
| 陝西布政使司 | 285,355 | 2,155,001 |
| 河南布政使司 | 314,785 | 1,891,087 |
| 廣西布政使司 | 210,267 | 1,463,139 |
| 山東布政使司 | 752,365 | 5,196,715 |
| 北平布政使司 | 338,517 | 1,893,403 |
| 四川布政使司 | 214,900 | 1,464,515 |
| 江西布政使司 | 1,553,924 | 8,982,481 |
| 湖廣布政使司 | 785,549 | 4,593,070 |
| 廣東布政使司 | 705,633 | 3,171,950 |
| 福建布政使司 | 811,369 | 3,840,250 |
| 합계 | 10,654,362 | 59,473,305 |

* 전거: 『명태조실록』 권140, 홍무 14년 12월.

** 『명태조실록』의 기사에서 제시된 합계수치와 실제 합계 수치는 차이가 있음 (인구의 경우, 기사에 59,873,305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표와 같다)

홍무 초년에 비해 호구가 상당히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홍무제의 강력한 인구정책, 농업정책, 둔전정책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수준은 만력연간의 호구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음을 통해 홍무제의 정책이 거둔 결과가 상당하였음을 보여준다.⁵⁴⁾

홍무제는 홍무말엽에 자신의 통치구상에 따라 시행된 각종 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무제는 강력한 황제권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지향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승상제를 폐지하고 육부의 직권을 강화시켜 황제에게 직속시

53) 『명사』 권77, 志53, 食貨1, 戶口; 田制.

54) 『명사』 권77, 志53, 食貨1, 戶口.

켰다. 홍무제의 이러한 의도는 『皇明祖訓條章』을 반포하기에 앞서 흑형의 금지, 승상제 폐지의 정당성을 거듭 언급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짐이 거병한 뒤로 오늘날까지 40여 년인데 천하의 서무를 직접 처리하며 선과 악, 진짜와 가짜의 인정을 겪지 않음이 없었다. 그 가운데 간악하고 간사한 무리들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의심할 바가 없을 때에는 특별히 법을 벗어나 형벌을 추가하였다. 그렇게 한 뜻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여 법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 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임시 조치가 간악한 무리를 절멸시켰지만 守成하는 군주가 오래 쓸 수 있는 법은 아니다. 내 뒤를 잇는 군주는 천하를 統理하며 律과 大誥만 지키도록 하고, 黥刺, 荆劓, 闔割과 같은 형벌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신하가 이러한 형벌을 쓰자고 주청하는 경우에는 문신과 무신들이 곧바로 탄핵하는 상주를 올려 중형에 처하도록 하라. 예로부터 三公은 道를 논하고 六卿은 職을 나누었다. 秦나라가 처음 승상을 두기 시작하였으나 금방 멸망해버렸다. 漢, 唐, 宋이 이를 이어받았는데 비록 현명한 승상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인들로서 권력을 독차지하고 정사를 어지럽혔다. 우리 황조는 승상을 없애고 5府, 6部, 都察院, 通政司, 大理寺와 같은 이문을 설치하여 천하의 일을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서로 버티고 맞서서 억누르지 못하게 하며, 일은 모두 조정에서 총괄하니 온당하다. 앞으로 군주는 승상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신하가 감히 설립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문무 군신들은 곧바로 탄핵하여 중형에 처하도록 하라.⁵⁵⁾

물론 위에서 사례로 든 승상제 폐지의 정당성은 차지하고, 흑형에 대해서

55) 『명태조실록』 권239, 홍무 28년 6월 기축. “己丑 上御奉天門敕諭文武群臣曰朕自起兵至今四十餘年親理天下庶務人情善惡真偽無不涉歷其中奸頑刁詐之徒情犯深重灼然無疑者特令法外加刑意在使人知所警懼不敢輕易犯法然此特權時處置頓挫奸頑非守成之君所用常法以後嗣君統理天下止守律與大誥並不許用黥刺荆劓闔割之刑蓋嗣君宮生內長人情善惡未能周知恐一時所施不當誤傷善良臣下敢有奏用此刑者文武群臣即時劾奏處以重刑 又曰 自古三公論道 六卿分職 自秦始置丞相 不旋踵而亡 漢唐宋因之 雖有賢相 然其間所用者多有小人專權亂政 我朝罷相 設五府六部都察院通政司大理寺等衙門 分理天下庶務 彼此頡頏 不敢相壓 事皆朝廷總之 所以穩當 以後嗣君並不許立丞相 臣下敢有奏請設立者 文武群臣即時劾奏 處以重刑.”

는 자신은 창업군주로서 원말의 세태를 바로잡고 새로운 명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혹형을 시행했지만, 이후 황제들은 수성의 군주로서 혹형을 금지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홍무제는 절대 황제권을 보좌하는 특무기관을 두어 초법적인 직능을 부여했다. 명대 대표적인 특무기관은 錦衣衛와 宦官조직이 있지만, 홍무연간에 실질적으로 특무정치에 활용된 조직은 檢校와 錦衣衛였다. 검교의 시작은 주원장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시작되어 주로 감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홍무 말엽에 주로 호부와 형부에 관련된 업무를 했다. 원대의 樞密院을 大都督으로 개칭하였으며, 중외의 군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오왕시절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중서성에 정7품으로 도사와 검교를 두어 감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⁵⁶⁾ 이후 각 府의 照磨와 檢校를 혁파하고, 명 건국이후 중서성의 감찰기능을 담당하던 조마, 검교를 혁파했으며, 1376년(홍무 9)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치며, 左右司를 經歷司로 고쳤는데, 이에 종7품의 都事와 檢校를 두었다.⁵⁷⁾ 1380년(홍무 13)에 검교로 하여금 중외 여러 倉의 비축된 양곡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1390년(홍무 23)에 호부의 4部를 12部(河南, 北平, 山東, 山西, 陝西, 浙江, 江西, 湖廣, 廣東, 廣西, 四川, 福建)로 분화시키고 錢穀과 金帛을 담당하도록 하되 조마와 검교 각 1인을 두어 문서를 대조하여 출입하는 수량을 점검하도록 했다.⁵⁸⁾ 1392년(홍무 25) 홍무제는 中外文武百司의 職名과 品秩을 重定하여 반포했는데, 호부와 형부의 검교는 종9품의 품질을 받았다.⁵⁹⁾ 1394년(홍무 27)에 재외 각처의 布政司와 按察司, 각 府에 조마와 검교를 두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도록 『대명률』에 명시했다.⁶⁰⁾

명 건국이후 관리들에 의한 부정부패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승상 胡惟庸의 受賂, 호부시랑 郭桓의 貪行 등이 있다. 수뢰현상의

56) 『명태조실록』 권9, 3월 정축; 권14, 정월 병인.

57) 『명태조실록』 권14, 3월 무진; 권43, 홍무 2년 6월 계미; 권106, 홍무 9년 6월 갑오.

58) 『명태조실록』 권131, 홍무 13년 4월 임신; 권204, 홍무 23년 9월 무술.

59) 『명태조실록』 권222, 홍무 25년 11월.

60) 『명태조실록』 권231, 홍무 27년 정월 병인.

만연을 비롯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단순히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들에 대한 불만은 명에 대한 반발정서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홍무제는 단호하게 관리들의 탐학에 대해 경계하고자 했다. 명 통치의 안정을 위협하는 관리들의 탐학에 대한 대처는 『대명률』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홍무제는 『대명률』에 제시된 규율을 어기는 관리에 대해 엄하게 징계하고, 권력을 가진 세력이 피험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皇親과 國戚에 대해 비호하지도 않았다. 이는 空印案, 郭桓案 등 일련의 대규모 관리처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안의 경우, 명초 지방재정의 수지결산 보고절차에 인장이 찍힌 빈 장부를 사용하였다고 홍무제가 처벌한 사건이었다. 지방의 포정사, 府·州·縣의 관리는 인구, 租稅, 물품 등의 재정수지 문서를 매년 호부에 보고하면 호부는 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여 회계를 검인해 주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문서를 지방에 돌려보내 재검토 및 작성하도록 했다. 재정관련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문제로 복잡한 각종 회계내용을 완벽하게 작성하기도 어렵고, 혹 이상이 발견되어 지방관아까지 되돌아가 검토하여 재작성하고 이를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지방정부는 여분의 인장찍힌 문서를 지참하여 호부의 검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여 제출했던 것이다. 이런 관행을 인지한 홍무제가 조사와 관련 관리들의 처벌을 지시하면서 공인안 사건이 발생했다.⁶¹⁾

공인안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절차도 없이 수많은 관리들이 처벌되었다. 『대명률』에 규정된 형벌을 무시하고 회계관련 관리들이 처벌되었다는 점에서 공인안은 절대 황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제를 벗어난 형벌이 시행될 수 있었던 사례였다. 또한, 호부시랑 곽환이 권세를 이용하여 탐학한 것으로 일어난 곽환안은 관련 관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한번 처벌받았던 관리가 이후 다시 탐학하였다는 점에서 홍

61) 劉孔伏, 『明初空印案新探』, 『貴州文史叢刊』1986-1; 柏樞, 『朱元璋與空印案』, 『紫禁城』2011-5.

무제가 국가통치의 방법으로 시행하였던 중형정책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지 못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곽환안의 처벌에 있어 관련자 처벌에 신하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홍무제는 조사를 담당하였던 관리를 처벌하는 것으로 급히 마무리하였다.

1395년(홍무 28) 2월 宋國公 馮勝의 獄이 발생하여 홍무연간의 마지막 대규모 옥사가 일어났다.⁶²⁾ 개국공신을 중심으로 한 신료·관리들에 대한 견제를 마무리한 홍무제는 황친, 국친에 대한 안정적인 우대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홍무제는 국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형을 군신에게 쓰지 못하도록 금했다. 홍무제가 제정하여 반포한 『대명률』을 부각시키면서 한편으로 형율의 적용에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후대 황제들은 승상을 두지 말 것을 명시하고 이를 부추기는 신하들은 엄벌하도록 지시했다. 황친은 역모의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지만 나머지 죄는 종친이 회의하여 황제의 결재를 받으며, 법사는 상주만 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체포해서는 안 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홍무제의 지시는 典章에 새겨서 영원히 준수하도록 했다.⁶³⁾

홍무제는 자신이 통치구상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각종 법제제정에 대해 이후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후대 황제들이 신하들에 의해 좌우되어 황제중심 국정운영의 틀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祖訓條章』을 반포하여 개정을 엄금하였다.⁶⁴⁾

V. 맺음말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의 요약은 생략하고, 『대명률』은 처음 오 원년과 대

62) 『명태조실록』 권236, 홍무 28년 2월 정묘.

63) 『명태조실록』 권239, 홍무 28년 6월 기축.

64) 『명태조실록』 권241, 홍무 28년 9월 경술.

명 건국 직후의 『명율』에서 점차 수정되어 홍무 7년 『대명률』에서 확대되었다가 점차 분량에 있어 간소화되었지만, 내용에 있어 이전의 법률에 비하여 중형의 성격이 강하다. 『대명률』의 엄격한 형벌조항에도 불구하고 홍무제의 통치구상에서 어긋나는 사회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초법적인 혹형의 『대고』를 편찬하였지만, 홍무 연간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농민봉기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홍무제가 구상하였던 통치체제는 다양한 제도정비와 정세변화를 통해 달성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황제중심의 통치질서 확립에 큰 걸림돌이었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지는 못했다. 이는 신분제사회에서 농업기반의 생산력으로 움직이는 명대에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정착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후대 연구자들이 동의하듯 홍무연간의 관리들 부정의 정도는 다른 시대에 비해 월등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상대적으로 엄중한 형률이 적용되었던 『대명률』과 『대고』 등 법제에 바탕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제의 정비와 이의 준수를 강조하였던 홍무제가 스스로 법제준수의 틀을 벗어나 법률 외의 혹형을 가한 점은 법제의 기능을 무시한 측면이 있었다.

세밀한 법 조문의 강독과 분석은 중요하다. 이외에 『대명률』의 분석에 있어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하고 제정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한 입법취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된다. 이를 간과하면 자칫 입법취지와 동떨어진 과도한 분석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의 문제는 『대명률』의 번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대명률』의 제정주체가 국가이며, 이때의 국가는 지배집단이 아닌 황제를 의미한다. 황제, 홍무제가 모든 조항을 검토하며 그러한 조항을 그렇게 포함시켰다는 점은 단순히 법 조문에서 언급되듯 국가와 개인, 국가와 관리, 관리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설정에서 있어 국가(홍무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명률』의 편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의 정치, 사회적 경향성을 분석함으로써 조문의 침삭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관련없이 각종 법령에 따라 이익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는 율문해석에 대한 매우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다. 이는 명대 이후 나오는 각종 주석서의 주석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明太祖實錄』

『明史』

『諸司職掌』

『大明會典』

『大誥三篇』

『明朝小史』

『大明律·大明令』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_____,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 2011.

_____,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 37, 2012.

류부근, 「대명률 "保辜限期"규정의 형사법적 의의」, 『비교형사법연구』 12권 1호, 2010.

문형진, 「조선시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법사학연구』 37, 2008.

심재우, 「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大明律』의 위상」, 『역사와현실』 65, 2007.

이성무,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역사학보』 125, 1990.

장경준·진윤정·허인영, 「『대명률직해』 이본의 계통과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1): 고려대 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정공식, 「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49권 1호, 2008.

정공식·조지만, 「조선 전기 『大明律』의 수용과 변용」, 『진단학보』 96, 2003.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大明律』의 적용」, 『역사와현실』 75, 2010.

한상권, 「대명률 위궤치사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법사학연구』 50, 2014.

한상돈·조지만, 「『大明律』 保辜限期에 관한 研究: 조선시대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51, 2015.

楊一帆, 「“大明律”修訂始末考」, 『政法論壇』 1990-2.

李佳, 『論明代的君臣衝突』,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劉孔伏, 「明初空印案新探」, 『貴州文史叢刊』 1986-1.

柏樺, 「朱元璋與空印案」, 『紫禁城』 2011-5.

<Abstract>

Hongwu Emperor's plans of country governance and the Great Ming Code in the Early Ming Empire

Kim, Kyeong Lok*

In this paper, I researched Hongwu Emperor(洪武帝)'s plans of country governance and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which was the general source of criminal laws in the Early Ming Empire. First, I will focus on state of a Hongwu period and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let's look at linking Hongwu's rule plan and "the Great Ming Code".

Hongwu period was meaningful in established of the Law system(法制) and instituting the Rite system(禮制) besides common change of era. The representative law, "the Great Ming Code", and it is influenced not only China history but also Korea history, Japan history the neighboring countries. Above all, we must analyze in order to understand precisely for the "the Great Ming Code" what the situation was like, who made and what purpose did he make? If not taking into account the conditions of the era of legislative period, we do not underst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Ming dynasty established, but also it marks the reconstruction of a large number of Han Chinese regime's laws and institutions. In terms of construction of the legal system, as the founding emperor of the Ming dynasty, Hongwu emperor considered it very seriously. In the early period of establishment of

* Senior Researcher, Military History Institute.

the Ming Dynasty, Hongwu emperor ordered to to formulate the law with template of Tang code(唐律).

Hongwu emperor, who was from a poor family, became an emperor of Ming Dynasty in 1368, and executed a serial of severe penal laws concerning the punishments of the officials who were blamed for their illegal conducts. The feudal official malfeasance is universal social phenomenon in early Ming period.

In the Ming Dynasty emperors reign, politics was influenced by the former. The Ming Dynasty learned legislative and judicial experience from Tang(唐) and Song(宋) Dynasty in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formulated a series of law to maintaining the feudal rule. “The Great Ming Code” is not only a classic rule of law but also reflects the feudal moral ideology, it contains rich ethical thoughts.

The phrase “integrating punishment with education”(明刑弼教) comes out in docum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ng Dynasty, responding to the needs of governing the country in the early days, it is used as the guiding ideology of the Ming Dynasty to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ctivities. The Hongwu emperor's legal thoughts include “Using severe laws in troubled times”, “Enacting Reasonable Laws”, “Enacting concise and stable laws”, “combining ceremony with punishment” and so on. The first one in fact is only the core idea of his legal thoughts, which is a unique feature of the Ming Dynasty.

Hongwu emperor's severe law thought stems from domination history of China and has been influenced a lot by traditional laws in china's history. It's a theoretical system, developing from ancient legalists and severe punishment thought. In the early years of Ming Dynasty, the society was in disorder and repression. Hongwu emperor at the present established the idea of “Using severe laws in troubled times” to govern the country, complelely strengthening the legal system. He also had taken a series of political, economic, military, legal and cultural measures to ensure faster socio-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The rapid finish of political stability had laid a solid foundation for Ming Dynasty's ruling. Hongwu emperor's idea was expressed "severe law governing office"(重典吏治).

Not long after the Ming dynasty established, the political situation was unstable, and the economy also suffered severe damag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consolidate the new power, Hongwu Emperor drew lessons from the failure of Yuan(元) dynasty, summarized the successful experience on the management of past ages after repeated thinking, and launched the severe punishment anti-corruption strategy. Due to a profou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misery life experience in his early years, he attached great hatred towards the official embezzlement, so the formation of the severe punishment anti-corruption was never an accident. The anti-corruption measures were extremely brutal and cruel. The measures Hongwu Emperor adopted were as follows: Establishing severe punishment anti-corruption policy. This thoughts ran through the whole process when formulated "the Great Ming Code", "Da Gao"(大誥) and other messages as well as regulations. And the layout of supervision. A supervisory committee was set up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What's more, the supervision mechanism was built so as to encourage people to report on the guilt of others.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se measures, the effect of anti-corruption did not achieve the desired results.

[Key Words] Hongwu Emperor(洪武帝), plans of country governance(統治構想),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Da Gao(大誥), the Rite system(禮制), the Law system(法制), severe law governing office(重典吏治)